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17일, 박상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3. 12.)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국회(임시회 · 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상혁의원)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금융시장에 미

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되어야 함.

그런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운용 시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그릇된 인식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기금 관리·운용의 원칙에 ‘공공성 유지’를 추가·명시하려는 것으로, 기금을 관리·운용할 때 우리나라 국민경제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함으로써 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이며, 기금관리주체가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상의 일반원칙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다만,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제기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연금보험료 수입 감소를 대체하고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기금 운용 수익의 증대가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수익성’은 자산군별 평균 수익률 등 구체적 수치

를 통하여 목표 달성 여부 및 그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평가할 수 있지만, ‘공공성’은 불확정개념으로서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볼 측면이 있는 점도 고려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은 수익의 최대 증대를 최우선 가치로 고려하며 관리·운용되어야 하므로 국민연금기금 적립금의 ESG 투자를 의무화하는 강행규정으로의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ESG 투자와 기금투자수익률이 반드시 상충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 시 ESG를 고려함으로써 수익성에 미칠 장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ESG 투자의 원칙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의 방법으로 국민연금기금을 관리·운용

하는 경우에도 ESG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